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신설〉
▣ 김성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2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회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5. 11. 0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대형 배터리 저장시설 등에 사용·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진화 난이도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

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신설

개정안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 ②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③ 소방용수시설 현황, ④ 소방시설 현황, ⑤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⑥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소방활동) ①·② (생 략) <신 설>	제16조(소방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 2.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3. 소방용수시설 현황 4. 소방시설 현황 5.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소방청은 「행정조사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에 따라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1]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음.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해야 한다.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① 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
3.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
4.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
5.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
6.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주·야간)
7.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
8. 기타 조치 필요사항
9. 삭제

---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개정안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 ②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③ 소방용수시설 현황, ④ 소방시설 현황, ⑤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⑥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소방기본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 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인데[3],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법령, 조례, 규칙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과 조례·규칙에 근거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과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짐.

다만, 소방활동 관련 행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방기본법」에 상향하여 명시할지 여부 및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조사 항목을 어느

---

3)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임.

개정안과 같이 행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비해 국민에 대한 규범력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행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 리튬이온전지, 전기차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의 새로운 조사 요소를 즉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임.

또한, 현재 행정조사 목적은 다르지만 개정안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각 개별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4].

---

4)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과 현행 규정에 따른 행정조사 내용 비교>

개정안 제16조제3항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비고 (타 법률에 따른 자료 조사 예시[5])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①1 *소방대상물 용도별·규모별 현황 조사
2.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3.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	「소방기본법」 §21의2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리(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에 피난기구, 유도등 등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① 및 시행규칙 §9 * 출입구 및 비상구 등 설치·유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② 및 영 §7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사항
	5.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② 및 영 §7 * 피난시설 현황 등
3. 소방용수시설 현황	2.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 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	「소방기본법」 §10① *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
4. 소방시설 현황	4.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12, §5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①3, §7② 및 영 §7① *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5.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7.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	「위험물관리법」 §22① * 위험물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⑤ 및 영 §19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6.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 인원(주·야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①4. * 실태조사 항목
	8. 기타 조치 필요사항	

예를 들면, 이 법(「소방기본법」)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개정안 제3호 관련)에 관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 등을 규정한 법인데[6], 소방대상물[7]의 용도별·규모별 현황(개정안 제1호 관련), 피난시설 현황(개정안 제2호 관련), 소방시설등[8]의 설치·관리 현황(개정안 제4호 관련), 리튬이온전지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현황(개정안 제5호 관련)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화재안전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5조, 제7조, 17조 등)[9].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리튬류의 금속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인데, 소방청장 등에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

5) 각 조문의 내용은 [참고1] 참조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실태조사, 화재안전조사 개요는 [참고] 참조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개정안 제5호 관련)(제22조 등)[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2호 및 제4호 관련)(제52조)[11].

특히,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는 정부가 이미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서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하기로 확정하여 이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규정하기로 계획('26년 상반기 완료 예정)하고 있고[12],

현재 리튬이온전지 등 연소물질의 위치 및 적재 현황에 대해서, 소방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404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위치와 현황을 파악하고 동 규정

10) 참고로, 소방청은 현재 리튬류의 금속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저장·취급·이송·운반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함.
11) 그 밖에 동 법은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서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2)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면,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 시 화재예방법 제17조에 의해 저장·취급기준에 따라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시 설치와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자료: 소방청).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개정안에 관하여 소방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조사 항목을 법률에 과도하게 명시할 경우 현장 변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의 근거는 법률에 명시하되 자료 조사의 세부 항목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소방관련 행정조사를 규정한 주요 법률(예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관계인의 의무)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제52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5조에 따른 관리사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한 관리업자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4. 12. 30., 2020. 6. 9., 2020. 12. 22., 2023. 12. 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그 밖에 동 법은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제9조(완공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에서도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소방기본법」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면,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 시 화재예방법 제17조에 의해 저장·취급기준에 따라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시 설치와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자료: 소방청).

참고 2 화재예방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요

(자료: 소방청)

○ **(목　　적)** 화재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방법)**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고,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 사용 가능

○ **(조사항목)**

①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②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③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　분	조사항목
정책방향 및 여건	◦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관련 사항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관련 사항 ◦ 화재발생현황에 관한 사항 ◦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 관련사항
소방대상물 관리현황	◦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안전 관련 기술 개발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치 · 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 계절별 · 시기별 · 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 인증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3 화재예방법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개요

(자료: 소방청)

□ 근　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화재안전조사 절차

□ **화재취약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체계**

○ **(조사주기)** 소방관서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연 1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연 5~10%)

* 중점관리대상('25년 기준 7,338개소), 화재예방강화지구('25년 기준 164개소), 최근 화재 등 사회적 이목 집중된 대상

○ **(표본조사)** 자체점검 결과 제출대상 중 불량사항 이행 완료보고서 대상에 대한 개선 완료 여부 표본조사 강화 및 화재안전조사 시 확인

* (기존) 부실점검 의심 대상 → (강화) 불량사항 이행 완료보고서 대상까지 확대

○ **(안전조사 표준화)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기능** 역할 표준화

*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 조사항목 표준화, 중앙·지방 합동조사로 개편

○ **(안전조사 항목)**

①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⑤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⑦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⑩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⑪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⑫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⑬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⑭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⑮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참고 3 화재예방법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개요

(자료: 소방청)

구분	목적
목적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위험요인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 수립
내용	**1. 화재위험요인 조사**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평가**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소방시설등의 가.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나. 주요 구성부품 적합 여부 다. 성능시험.측정 라. 기타 유지 기준 적합 여부 **4. 비상대응조직, 교육훈련 평가** **5. 화재위험성 평가 등**
방법	· 외관점검, 설비작동, 시험 및 측정, 부품 사양 및 성능 확인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 **위험물, 전기, 가스.화공, 건축** **· 비상대응훈련 평가 (인적요소 평가)** **· 위험성 평가(정량적 평가)** **·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역학적 평가)**
인력	**· 기본 10명**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2. 기타 기술사 등 3. 소방, 전기, 화공, 가스, 건축, 위험물 관련 자격자 4. 소방안전교육사
장비	· 소방점검장비 20종 **·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관련 진단 장비 약 26종** **·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비상대응훈련 평가 장비**